

##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

문서번호 슈로더 11-2012-156 (박경순 3783 0508) 2012. 6. 1.  
수 신 수신처 참조  
참 조 투자신탁상품 관련부서장  
제 목 투자신탁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 통보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당사가 운영하는 슈로더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H(채권-재간접형)의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변경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, 투자설명서의 변경은 자본시장법 제89조에 따른 수시공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.
3. 주요 변경 사항: 1) 환매수수료 부과면제  
2)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
4. 변경시행일: 2012년 6월 1일 (환매수수료 부과 면제 시행일:2012년 8월 30일)

첨 부: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 주요변경내용 1부. 끝.

수 신 처: 미래에셋증권, 삼성증권, 키움증권, 하나은행, 하이투자증권

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

대표이사 사장 전 길 수(인)



# 슈로더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투자신탁 H(채권-재간접형)

## 1. 신탁계약서 주요 변경 내용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41 조(환매수수료)	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종류 A 수익증권 - 30 일 미만: 이익금의 10%</li> <li>2. 종류 C 수익증권 -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li> <li>3. 종류 C-e 수익증권 -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li> <li>4. 종류 F 수익증권 -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li> <li>5. 종류 I 수익증권 -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li> </ol>	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2012년 8월 29일까지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다만, 2012년 8월 30일부터 환매청구시에는 별도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종류 A 수익증권 - 30 일 미만: 이익금의 10%</li> <li>2. 종류 C 수익증권 -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li> <li>3. 종류 C-e 수익증권 -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li> <li>4. 종류 F 수익증권 -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li> <li>5. 종류 I 수익증권 -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li> </ol>
제 50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<p>② 1. 투자운용인력</p>	<p>②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)</p>

## 2. 증권신고서 (투자설명서) 주요 변경 내용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															
<p>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 (3) 환매수수료,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/p>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집합투자 기구 종류</th> <th>환매수수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</td> <td>30 일 미만: 이익금의 10%</td> </tr> <tr> <td>C, C-e, I, F</td> <td>90일 미만: 이익금 의 7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집합투자 기구 종류	환매수수료	A	30 일 미만: 이익금의 10%	C, C-e, I, F	90일 미만: 이익금 의 70%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집합 투자기 구 종류</th> <th>2012년 8월 29일까지 환매 청구시</th> <th>2012년 8월 30일부터 환매 청구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</td> <td>30 일 미만: 이익금의 10%</td> <td>환매수수료 없 음</td> </tr> <tr> <td>C, C- e, I, F</td> <td>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td> <td>환매수수료 없 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집합 투자기 구 종류	2012년 8월 29일까지 환매 청구시	2012년 8월 30일부터 환매 청구시	A	30 일 미만: 이익금의 10%	환매수수료 없 음	C, C- e, I, F	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	환매수수료 없 음
집합투자 기구 종류	환매수수료																
A	30 일 미만: 이익금의 10%																
C, C-e, I, F	90일 미만: 이익금 의 70%																
집합 투자기 구 종류	2012년 8월 29일까지 환매 청구시	2012년 8월 30일부터 환매 청구시															
A	30 일 미만: 이익금의 10%	환매수수료 없 음															
C, C- e, I, F	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	환매수수료 없 음															
<p>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</p>	<p>(2) 수시공시 ① 투자운용인력</p>	<p>(2) 수시공시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 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)</p>															